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시민생활사 박물관 리모델링(증축) 공사]

- 점검일시 : 2019.03.05 (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전해령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각파이프 절단작업자 보안면 미착용. 보안면 착용후 작업 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방지업무 등)</p>		2019.03.06	
		안전교육 후 보안면 지급 완료	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핸드그라인더 등 각종 전동용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 뽑아놓을 것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구의 적정 설치)</p>		2019.03.06	
		안전교육 실시(작업 완료 후 정리정돈 철저 지시)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 벨트와 방망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므로 고정요망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		2019.03.06	
		추락방지 벨트 및 방망 고 정완료	

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이동식 비계 발끝막이 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직방망도 풀어져있는 상태이므로 수직방망을 견고하게 설치 또는 높이 10cm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요망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 007 (이동식비계)</p>		<p>2019.03.06</p> <p>수직방망 설치 및 발끝막이판 설치 완료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소화기 점검기간 경과하여 사용 불가능한 것이 있음. 소화기 전수조사하여 점검 조치요망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화재/폭발/질식예방 및 안전작업기준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</p>		<p>2019.03.06</p> <p>사용불가 소화기 폐기처분 및 전수조사 하여 점검 조치함.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 고임목이 불안정하므로 안정적으로 보완조치요망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VI.전도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 2.건설기계·장비 및 운반하역기계 사용시 전도방지시설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</p>		<p>2019.03.07</p> <p>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 침하방지 받침목 보완 조치</p>	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

- 위험물보관소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하고, 보관물질의 종류와 개수 표기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 024 (위험물 보관소)



2019.03.06

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보관물질 종류와 개수 표기작성 조치함.

